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33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17. 06. .
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□ 위탁운영 목적

-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이해하고,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(법인·단체)에 위탁운영 하여, 우리군 장애인들에게 교육·상담, 정보제공,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□ 시설현황

- 시설명 :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
- 시설위치 : 평창군 진부면 진별1길 144-19(상진부리 245-23)
- 시설규모 : 연면적 1,423.36㎡/철근콘크리트조(지상2층, 지하1층)
- 사업비('17년 기준) : 67백만원(군비)

* 연도별 보조사업, 자체사업(군비) 지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
□ 위탁개요

- 위탁기관 : 장애인복지법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
- 위탁기간 : 2017. 7월 ~ 2022. 6월(5년간)
- 위탁내용 :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
 - 기본사업 : 시설관리 운영

□ 향후 추진일정

-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: '17. 7월
-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: '17. 7월

□ 민간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

-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마련에 기여
- 후원금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사업 확대 추진에 기여

□ 관련자료

- 관련법령 1부 끝.

소관 관·과·소		주민생활지원과
입 안 자	관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
	담당 직위·성명 (전화)	복지기획담당 김영옥 (330-2341)

□ 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**조례나 규칙**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**조례나 규칙**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【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